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 11. 27. ~ 12.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창 환]

<의안번호 제2013 - 88호>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13. 11. 18(월)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13. 11. 20(수)

2. 제안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기금조성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증 감	
재난 관리 기금	719,091	723,200	720,000	3,200	722,291
중소기업육성기금	5,794,759	670,000	180,000	490,000	6,284,759
옥외광고정비기금	65,295	71,920	0	71,920	137,215

4. 검토의견

< 안전총괄과 >

【재난관리 기금】 (p35)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2014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예치금 회수 719,091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80,000천원, 보조금 420,000천원, 이자수입 23,200천원으로 총 1,442,291천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예·경보시스템 정비 사업에 700,000천원, 예치금 722,291천원, 보조금 잔액 반납 20,000천원으로 총 1,442,291천원임
- 모든 기금은 법정적립금 확보,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p40)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으로
- 2005년도 6월부터 설치하여 적립목표액 100억원을 목표로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예치금 회수 5,794,759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00,000천원, 이자수입 170,000천원으로 총 6,464,759천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자보전 180,000천원, 예치금 6,284,759천원으로 총 6,464,759천원임

〈도시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p44)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 3. 29 조례로 제정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적립목표액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70,000천원, 예치금 회수 65,295천원, 이자수입 1,920천원 총1372152천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음.

5.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